

第245回国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時 2004年2月18日(水)

場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공직선거법개정건의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법개정건의 1

(15시42분 개의)

○委員長 李在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국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개정건의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개정건의를 상정합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9일 4당 합의하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계속해서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배분의 석패율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로 각 당이 상당한 고민을 한 끝에 간사회의와 선거법소위를 통해서 여성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비록 교섭단체 간사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하였습니다만 선거의 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다소 있고 또한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전체 토론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사를 대표해서 원희룡 위원이 나오셔서 간사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긴급사항을 처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각 당이 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에 각 당이 추인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문서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문서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은 10만 5000명 이상 31만 5000명 이하이며 인구 산정기준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주도록 선거구획정위에 통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方鎬 委員 단서를 하나 붙이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인구 하한 10만 5000명, 상한 31만 5000명 합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약 9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지역구 의석이 227석이기에 때문에 그에 추정되는 9석을 보탠 236석 내외라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상한을 정하고 지역구 정수를 정해 가지고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를 정할 때 현재 10만 5000이 넘는 독립선거구는 독립선거구대로 통합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A선거구가 독립선거구이고 옆에 있는 B선거구도 독립선거구이면 인구 10만 5000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그 두 선거구는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넘

기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단서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의견을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상·하한선을 10만 5000명 이상 31만 5000명 이하로 정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면서 이 안으로 해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 그러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만 5000과 31만 5000은 3 대 1로 양쪽으로 짝 차는데 현재 판결은 전 인구수를 국회의원수로 나눈 평균 인구수의 $\pm 50\%$ 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대 1만 되면 무조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수를 국회의원 수로 나눈 그 평균 인구수의 $\pm 50\%$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령 236석이 되었다 그러면 236석으로 만들어진 평균 인구수의 $\pm 50\%$ 범위 내로 만들려면 이것이 계속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이런 상태로 보내 줄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저히 선거구 획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 주느냐? 10만 5000과 31만 5000 중에서 10만 5000이든지 31만 5000이든지 둘 중 하나를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불변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가령 ‘이것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지만 두 개 다 불변으로 만들어 놓고 선거구 획정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께서 상한보다도 10만 5000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도를 반영한다면 가령 10만 5000은 불변으로 하되 31만 5000은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서 약간 가변성을 두도록 인정을 해 주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되 합헌적인 현재 판결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되 현재보다 가장 적게 늘어나는 인원수를 택하도록 지침을 주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10만 5000과 31만 5000

으로 하되, 두 번째로는 10만 5000은 불변으로 해 주고 부득이한 경우 31만 5000은 약간 가변해도 좋다, 그러나 세 번째 그 조건은 합헌적인 방법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되 가장 적게 늘어나는 인원수를 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10만 5000, 31만 5000 양쪽을 불변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서 통과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제가 이 안을 먼저 회부한 이유는 오후 2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0만 5000~31만 5000’은 일종의 합의사항에 불과했지 정식으로 정개특위가 의결하여 문서로 넘겨주지 않아서 획정위원회가 구두로 넘어온 그 합의사항을 근거로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정개특이 그것을 먼저 의결해서 서면으로 넘겨달라는 요구가 있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먼저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 지금 지난번 3개항의 선거법소위 합의사항 그리고 간사회의 합의사항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데 대한 두 분의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혹은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상후보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서 합의문에 명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상·하한선이라는 것이 무슨 불변적이거나 가변적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0만 5000~31만 5000’의 한계를 아래·위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결과적으로 획정된 그 선거구의 최다 인구수, 최소 인구수를 산정해 보아서 그것이 결국 3 대 1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판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

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쪽은 불변이고 한쪽은 가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상한·하한이라는 것은 둘 다 한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 있는 선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선거구 구역을 지나치게 혼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꾸만 “하한은 불변이고 상한은 가변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는 저의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 합의했던 3개항만을 확정위원회에 넘기고 그다음에 그 3개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묵시적 또는 가시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은 ‘그 원칙에 따라서 하위 행정구역을 임의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점에 비취볼 때 불가피하게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아예 증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합의 못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3개항의 합의를 가지고 그냥 의결해서 확정위에 넘기고 확정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확정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3 대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었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단서를 자꾸 달아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金學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선거구획정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한테 요구하기를 “10만 5000~31만 5000을 이대로 지켜서는 확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10만 5000은 불변으로 하고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정개특위가 양해해서 넘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원희룡 위원** 저도 유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취지와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金學元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 대 1 범위 내에 있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떻게 확정하든 저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결정이 3 대 1 편차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수를 획정한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서 $\pm 50\%$ 를 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만 5000~31만 5000을 가지고 확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지역구 수에 따라서 이 인구기준선이 이동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 기준까지 현재의 결정을 따르려면 이 상·하한 중의 하나는 여지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지 증구를 하기 위해 기준을 허물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확정하라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金學元 위원님, 그런 취지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10만 5000에서 31만 5000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도 불변인 상황으로 해서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가령 10만 5000보다 넘는 10만 7000짜리가 있고 또 그 옆에 10만 8000짜리가 있을 때 인위적으로 그 2개를 합하는 것입니다. 그 2개를 합하면 31만 5000이 넘지 않지요. 인위적으로 합해서 선거구수를 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마는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만 5000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데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선거구도 안전하고, 10만 7000짜리도 안전하고 옆에 있는 10만 8000짜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판인데 둘을 합하라고 하면 그것에 승복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들께서 선거구를 확정할 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거구를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만 5000과 31만 5000으로 정해 주었을 때 31만 5000이 3 대 1로

딱 차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31만 5000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변성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없다, 두 손 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있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委員長 李在五** 김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합의한 3개항의 정신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한선 10만 5000, 그리고 상한선 31만 5000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부대조건으로 지역구수 227명을 명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역구수 227명 자체를 명기하는 것은 삭제했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이나 하면 근본적으로 인구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10만 5000에서 31만 5000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가능한 지역구수 227명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해라…… 우리의 두 가지 요구사항에 인구 10만 5000에서 31만 5000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희룡 위원이 얘기했는데 현재의 판결정신은 3 대 1 그리고 전체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평균 인구 수의 $\pm 50\%$ 를 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두 개의 취지를 전부 다 살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金學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 7000과 10만 6000이 있는 경우 부득이 하면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합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국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3개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金學元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한선 10만 5000만 두고 상한선 31만 5000명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폐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에서 분명히 10석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정신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합의한 사항 그대로

가고 그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최대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몇 석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사전에 우리가 하한선만 정해 주고 상한선 자체를 풀어주게 되면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합의한 대로 선거구획정위가 해 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중간에 정개특위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합의했던 큰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우리가 합의한 사항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張誠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金學元 委員** 지금 얘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간사들끼리 얘기할 때 김성호 위원님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10만 5000~31만 5000으로 할 경우에 국회의원 수가 몇 명쯤 늘어나느냐” 하니까 “대략 9명 내지 1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9명이 는 236석으로 하는 것으로 못박을까 하다가 “236석으로 정하면 국회의원수 늘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박으면 되느냐”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金學元 위원님이 선거구획정위원이니까 선거구획정위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십시오. 9석을 늘린다 뭐한다는 얘기를 여기에 문자로 박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 것이지 227석으로 못박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천정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가만 계세요. 먼저 손을 드신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시고……

○**張誠源 委員** 이미 우리 정개특위에서 국민들께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의사항인데 “합의사항 1.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 바로 273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기준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합의사항이 “인구 상·하한을 10만 5000~31만 5000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을 두려다가 이것을 굳이 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네 번째 합의사항은 두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두려고 했던 합의사항이 “선거구 확정과정에서 선거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지역구 수가 가감되는 경우에는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27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우리당 측에서 227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느닷없이 227명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아닌 말로 우리가 227명을 지키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지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227명을 지키려고 하면 인구하한이 10만 6579명이 되고 인구상한은 31만 9738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만 5000~31만 5000을 상·하한선으로 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이강래 선거구 확정위원이 들어오셔서 227명을 굳이 지켜야 한다, 이것이 273명이나 3대 1이라는 대명제와 마찬가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소위에서 합의된 바도 없거니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아까 金學元 위원님께서 “하한선 10만 5000은 될 수 있으면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 실제로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한선도 손을 대고 상한선도 손을 대면 확정하는 데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한선만큼은 정하고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73명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인구 기준을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10만 5000, 31만 5000으로 정해서 선거구 확정위원회에 넘기

고’, 그리고 네 번째 ‘불가피한 이유로 지역구 수가 가감되는 경우 그것은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선거법소위원이 간사회의인가 하여튼 각 당 간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국 합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10만 5000에서 31만 5000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227명의 지역구의원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들은 그것을 좀 늘려야 한다는 당도 있었다가, 결국 227석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확정과정에서 도저히 법…… 아마 우리가 선거법 제25조까지 초안에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제25조가 뭐냐면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하되,”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확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증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증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227을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몇 석 늘 수도 있고 몇 석 줄 수도 있다는 것에 양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 당에서…… 우리 특위 차원이나 간사회의 차원에서 실제로 획정을 해 봐서 몇 석이 는다든가 준다든가를 결정했던 게 아니라, 그때 예컨대 일부 정당에서 공식 회의니까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느 한 당에서 한번 해 보니까 그게 8석, 9석 늘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227로 나누어서 선거구 상·하한을 정확히 해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 張誠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 6580부터 31만 9738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만 6580이라는 것이 끝수를 5000 단위로 맞추고 약간의 유연성을 두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사실 그것을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날이 선거법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 내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그런 경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31만 5000, 10만 5000의 인구 상·하한선을 잘 지켜서 확정위원회가 회정을 해라. 그리고 단지 확정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서로 섞을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해 보니까 다소간의 가감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227로 하자는 입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다시 회의를 할 때 제가 오세훈 간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확정위 쪽에서 다시 해 보니까 9석까지 필요 없고 한 4석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지난번에 9석이라는 말도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고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회정을 해 보니 이제는 한 4석밖에 안 느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고, ‘9’가 ‘4’로 변했다고 해서 우리 정개특위 합의사항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킬 때 아마 이 점을 통과시켰더라면 아무 문제없이 통과됐을 것이고, 그날 그대로 확정위원회에 통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늦어져 가지고 지금 새로 재론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지금 선거가 50여 일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합의했던 대로 ‘1항,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 ‘2항, 선거구 확정인 기준은 작년 12월 말로 한다’, ‘3항, 지역구 확정인 기준은 인구 하한 10만 5000, 상한 31만 5000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확정위원회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위가 그런 정신을 존중하여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몇 석 늘더라도 그것은 수

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정위의 분위기 등등을 꼬치꼬치 따져 가지고 또 9석 늘겠다, 몇 석 늘겠다 하는 것을 정해 준다는가,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얼마만큼 허물어뜨리고 얼마 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확정위에 대한 정개특위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합의했던 가이드라인을 보내면서 확정위가 독립적으로 회정을 하도록 하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확정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또는 당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단지 각 당은 외부 확정위원들에게 각 당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만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해서 개정하는 새 선거법의 취지를 잘 지켜서 되도록이면 지금 확정위에 들어와 있는 외부 위원들한테 그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도록 전적인 재량권을 드리고, 각 당은 확정위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金學元 위원도 가셨고- 각 당의 입장을 잘 개진해서 그것을 노력해 볼 일이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정개특위가 다시 들고 온 게 아니고 ‘선거구 확정위원장님이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그쪽 위원장이 이쪽 위원장에게 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예, 원희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회의도 속기록을 남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속기록을 안 남기는 회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 정수 문제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다 고쳐 놓고도 현재까지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데, 물론 한나라당은 당론이 당초 10만 명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내에서 설득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10만 육천 얼마인가…… 산술적으로 227로 나누어서 나오는 평균 인구 수를 가지고 회정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하면서 간사회의에서 협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 기억하

실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양보를 더 해라. 10만 5000으로 가자”, 그러면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어떻게 늘어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초 방침대로 227명 그대로 가는 안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무엇을 양보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결과적으로 동의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논의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의원 정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은 관심 없습니다. 확정위에서 확정하는 대로 따를 겁니다.

다만, 지금 확정위원회 위원장이 정개특위원장에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독립적인 선거구를 합치면서 갈 거냐’ 이렇게 내부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정개특위의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야?’ 이런 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사항에서 문구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 안에서 얘기됐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정개특위의 의사를, 전체 합의가 안 된다면 의사 결정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정개특위에다가 확정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구한 사항을 왜 논의하냐고 논의부터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아마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선거법의 개정을 막았던 그 문제를 다시 건드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기왕에 민주당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의가 됐던 거라면 그 정신에 지금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애초 안대로 하자는 것일 합의……

○**委員長 李在五** 김성호 위원님, 앞으로 발언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하세요. 서로 막 주고받으면 회의가 안 되니까.

천정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원 위원께서 제 말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점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번 합의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27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을 섞을 수 없고 지세 등등을 고려해서…… 저는 그때 ‘기술적으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은 뭐라고 했지요? 여기 보면 ‘불가피한 이유로 지역구 수가 가감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유로 지역구 수가 가감되는 경우에 그것을 따른다고 했고, 우리가 그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점으로 가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아까 상한선을 움직이느니 하한선을 움직이느니 그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이러이런 것이 최소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귀 위원회가 재량을 가지고 소신껏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方鎬 委員**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번 합의사항 자체를 이 자리에서 원점으로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합의된 사항은 227석 지역구 합의가 아닙니다. 10만 5000, 31만 5000을 전제로 하고 약 8, 9석 넘는 것을 서로가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다 동의한 겁니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227석의 지역구를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 제기가 확정위원회에서 확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3 대 1로 맞출 수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상한선 일부를 띄워 주면…… 상한선을 띄운다고 해서 마음대로 띄우는 것 아니

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소 융통성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데도 인구 상한선을 정하고, 3 대 1로 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하한선을 고정하되 상한선은 전체 0.5%~1% 내외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한선에 융통성을 달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자꾸 한나라당 위원 분들이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번복하자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당의 입장은 100% 기존 합의에 따르자는 겁니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기존 합의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선거구를 실제 확정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몇 석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다른 당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구 상한선 자체를 31만 5000으로 정한 것을 풀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기존의 합의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개특위를 개최하기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선거구획정위원장께서 정개특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0만 5000, 31만 5000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보내 주셔야지, 우리가 합의되었다는 말만 듣고는 이 작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10만 5000, 31만 5000을 해 보니까 수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하한선 중의 어느 하나는 고정시키고 어느 하나는 풀어 준다든지 이런 양해사항이 정개특위에 있어야 우리가 작업을 하지 우리 마음대로 이것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문건으로 넘겨 주실 때 그 논의도 해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

여기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의 의견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위원회의 그러한 요구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넘겨 줄 것이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하나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하한선을 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하한선을 푼다’는 얘기가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31만 5000에 못 미쳐도 1개 구를 분할한다든가 이런 뜻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게 아니라 확정위원장 말씀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10만 5000과 31만 5000을 갖고 작업을 해서 다시 이것을 현재 결정인 3 대 1로 나누어 해 보니까 현행 273명의 정수를 맞추어 나가기 어렵다. 정개특위에서 하한선 10만 5000을 고정시키고 상한선 31만 5000을 약간 융통성을 주면 227명에 가까운 최근의 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227명에 가까운 수로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찬반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상한선 31만 5000을 약간 융통성을 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뜻이 뭡니까? 그 말을 제가 느끼기로는 31만 5000이란 것은 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31만 5000을 넘어가는 선거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상한의 의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저쪽 이야기는 ‘31만 500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상한이니까 내려올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오히려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나요?

○**委員長 李在五**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길게 논의할 것 없지요.

선거구획정위의 논의는 ‘31만 5000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31만 5000이 30만 6000이 되든…… 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상한이니까 당연한 거지요. 31만 5000이 상한이니까 그게 30만으로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상한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31만 5000이 넘고 32만이나 되도 그것도 분구 안 하고 한 구로 해도 되느냐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설명을 다시 할게요.

○**委員長 李在五**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하십시오. 또 자꾸 논의를 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金學元 委員** 첫째로 국회의원 수 227명을 자꾸 주장해서 227명으로 하면 4800만을 227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가 21만 3000이 되고, 인구 하한이 10만 6000에서 상한은 31만 9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정해 준 10만 5000에서 31만 5000은 원천적으로 227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7000 되는 지역과 10만 8000 되는 지역 2개를, 멀쩡한데도 2개를 다 합해 버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간혹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0만 5000, 31만 5000이 3 대 1이 꼭 차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나온 국회의원 수가 대략 9명이 늘어난다고 보는 모양인데, 선거구를 획정해서 9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236명이 돼서 이것을 4800만으로 나눠서 ±50%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정했던 10만 5000, 31만 5000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엇물려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도저히 획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0만 5000을 픽스(fix)해 달라는 얘기는…… 가령 10만 5000을 11만으로 올린대든지 12만으로 올린대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10만 5000으로 하한선을 정해서 나는 10만 7000 되는 경우는 구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의원들한테 예상외의 불이익을 주니까 10만 5000은 고정으로 해 주고, 31만 5000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령 30만으로 하든지 29만으로 하든지 하되 그것을 한정 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 수에서 가장 적게 늘어나는 방법으로 하도록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 범위 내에서 최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래요, 그럼 돼요.

좋습니다. 그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정치개혁특위에서 문서로서 ‘10만 5000과 31만 5000으로 하되, 두 번째

로 10만 5000은 불변으로 해 주고 31만 5000은 그 범위 내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되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장 적게 늘어나는 수로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문구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五** 큰 이의 없지 않습니까?

金孝錫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孝錫 委員**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차이는 아마 기본 전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27을 꼭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227을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것은 맞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천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렇습니다.

○**金孝錫 委員**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김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호 위원**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에다가 공식 문서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의해 애초에 합의한 대로 넘겨준 다음에 선거구획정위도 똑같이 우리 정개특위에다가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金學元 위원님 말씀 중에서 자꾸 곁도는 부분이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현역의원 선거구를 10만 5000으로 했을 때, 만약 10만 6000이 있고 10만 7000이 있는 경우에 10만 5000하고 31만 5000의 범위 내에서, 또 현재가 판결한 3 대 1, 또 전체 인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 이 정신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 내 선거구는 하한선 10만 5000이 넘어서 10만 6000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살아날 것이다, 또 그 옆에 있는 10만 7000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2개를 합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정개특위에서 확실하게 정해 달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는 대전제, 우리가 원칙에 부합되면 10만 6000하

고 10만 7000도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합의한 사항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한 대로 문서를 넘겨준 다음에 선거구획정위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서로 이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개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다음은 黃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하지 마세요. 김성호 위원님은 이제 더 하지 마십시오.

○**黃昌柱 委員** 민주당 소속 黃昌柱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잠정 합의해서 이해한 내용이 지금 회의록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10만 5000, 31만 5000으로 하되 10만 5000이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227석이 아니라 273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전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8, 9석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동의하시는가 해서 제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는데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27석을 자꾸 논의하고, 또 10만 6000, 10만 7000을 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이미 잠정 합의된 것을 지금 번복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위헌 판결을 하면 지역 면적이란가 여건을 따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농촌 지역의 한도가 지금 다 형클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도가 9석인데 1석 줄 것을 4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현재 며칠 남지도 않은 선거기간을 두고 웬만큼 합의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합의했던 것을 왜 번복하십니까? 이 정신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장선 위원** 김성호 위원님이 그것을 합치자

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당도 227명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꾸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黃昌柱 委員** 10만 5000이 넘는 위원님들은 수용이 안 되는 것이예요. 불가피하다는 말씀……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3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 선거구 획정의 인구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최근 인구인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지역구 인구 하한은 10만 5000명, 인구 상한은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획정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10만 5000은 독립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10만 5000은 불변이되, 31만 5000은 가변이되 합헌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정배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변이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委員長 李在五**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여성광역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배분의 석패율제도 도입 여부 문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를 대표하여 원희룡 위원 나오셔서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위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2월 16일 4당 간사회의, 그리고 2월 17일 선거법소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된 회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회의와 선거법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성광역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해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특정 선거구의 피선거권을 여성으로 하는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광역선거구의 의석수는 26석으로 하

며, 각 시·도(특별시·광역시·광역시도)의 인구기준을 200만 명당 1석으로 하되, 각 시·도에 1석씩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도별로 단수, 그러니까 남은 끝자리수에 해당하는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1석을 추가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여성 의석의 지나친 과소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역차별 제도인 만큼 한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7대, 18대 국회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패율제도에 대한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당 구도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구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비례대표 추천 명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석 범위 안에서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일반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천하되, 2인 이상을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석패율의 적용은 해당 순번에 표시된 비례대표 후보자가 속한 시·도(특별시·광역시·광역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이 낙선했을 경우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비례대표 명단에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 여성에 할당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특정광역시·도의 지역구 출마자들 전원을 석패율로 중복 출마시켰더라도 거기에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 할당 전국구 의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 여성광역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에 대해서는 석패율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간사회의 및 선거법소위에서의 합의사항으로서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 사안은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개정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제도에 대한 입법사안이기에 때문에 원래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를 해야 되고, 여러 경과조치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갖고 새로운 입법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매

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해도 좋다고 하는 위원회의 동의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정의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공청회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같기는 한데, 지금 사실 여성광역선거구제 문제는 그동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애초에 조금 논의가 되다가 들어간 얘기인데 갑자기 불쑥 나왔습니다. 지금 선거를 불과 두 달도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졸속적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졸속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졸속적으로 입법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우선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金聖順 委員** 저도 좀 얘기합시다.

○**委員長 李在五** 잠깐만요, 제가 우선…… 중대한 국사에 관한 부분이라 우리가 국회법을 가끔 적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하면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님!

○**원희룡 위원** 이것이 지금 선거법 개정입니다. 제정법이 아니고요, 전문 개정도 아닙니다. 부분 개정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니,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새로……

○**원희룡 위원** 그러면 모든 개정법에서 기존에 없던 조항을 집어넣을 때는 전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은 저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공청회를 하자,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委員長 李在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않습니까?

○**원희룡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기존에 없던 기구를 개설하는 그런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전부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委員長 李在五** 우리가 조금 전 합의사항에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의결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행법에 따르면 273명입니다. 그러면 여성전용구 26명을 하면 이게 299명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합의 처리한 현행법 273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소선거구제도하고…… 26개 이것은 소선거구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소선거구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시비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견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찬반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해주시면 바로 여기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회법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될 경우는 제정법안이거나 전문 개정법이거나요.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전문 개정이라는 것은 아예 이 비교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무슨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1조부터 끝까지 죽 완전히 새로 써서 비교표가 안 붙는 형태의 개정을 전문 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는 전문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법에 따른 필요적 공청회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여성광역선거구제라는 매우 중요한 선거 제도를 창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법에서 필요적으로 공청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청회 등을 해 보는 것이 옳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논의를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그 제도를 도입을 안 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공청회를 할 수는 없고…… 급히 해서 내일이라도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긴급하게 오늘 내일 중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심층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각 단체라든가 국민들의 반응을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자연스럽게 공청회에 준하는 찬반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래서 제가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에서 전체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체로 깔고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위원회의 전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천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가 갑자기 선거를 얼마 앞두고 제기된 문제이고, 또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전체회의에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李在五**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화 위원** 조금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장께서 물었기 때문에 저는 졸속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원희룡 위원님의 말씀이나 천정배 위원님의 말씀대로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간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졸속적인 입법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양원제를 의논해야 되는, 연구해 봐야 되는, 그래서 17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18대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공론화를 부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광역선거구제도도,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50년 동안에 사실 1인 1표 제

도로 죽 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단 그렇게 지금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번 17대 때 처음으로 1인 2표, 정당투표를 도입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여기에 갑자기 또 1인 3표로 간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양원제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시의원선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실패한 나라라고 봅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로서 이 시대에도 부정부패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실패한 나라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여성 중심의 사회, 또는 여성의 엄청난 공직 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애초부터의 과정이 아주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성의 정계 진출 확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합니다.

둘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 왔고, 그래서 애시 당초에 우리 개혁특위에서 한번 제기가 되었다가 그것이 물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저는 상당히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공청회건 지금 천정배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73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3당이 이미 합의를 했고, 이 합의된 것을 다시 또 건너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부터, 지금 의원 정수 문제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우선 제가 문제 제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李在五 말씀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저도 저희 당의 입장하고 좀 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좀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여성들이 전문직 내지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지원책을 만드는 것은 저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충분한 논의와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새로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엄청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동안에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논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약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고 있고, 또 이 제도가 무엇인지조차 굉장히 혼란해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중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냥 이렇게 딱딱 처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헌 소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법 중에서 여성에게 비례대표의 반을 반드시 할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만 우리가 지키더라도, 그리고 여성들이 이번에 다른 때보다도 경쟁력이 부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봐서, 기존에 우리 여성정치인의 비율이 한 6%가 채 되지를 앞섰는데 이것만 잘 지켜도 거의 10%에 육박할 수 있는 선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런 것을 도입하고 나서 나중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선진국 비율 -거의 20%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비율까지 올리는 작업들을 해야지, 지금 후진국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여성들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은 손쉽게 여성구를 통해서 진출하고, 또 어느 분들은 어렵게 그 지역구를 통해서 나올 때 누가 지역구로 나오려고 할지, 그리고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26명씩이나 주는데 지역구에서 굳이 여성들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제기하셨던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원래대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까.

아까 의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한테 전달된 게 아까의 의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4항을 붙이신 게 말입니다. ‘지역구 인구 하한은 불변이되, 인구 상한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아까 이렇게 의결하신 겁니까?

○**委員長 李在五** 인구 상한이 가변이라는 말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인구 상한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의결했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그러니까 ‘지역구 인구 하한은 불변이되, 인구 상한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붙이셨습니까? 아까 정확한 의결 내용이 됩니까? 맞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 뜻이, ‘인구 하한이 불변’이라는 것은 하한이니까 하한이 10만 5000이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구 상한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는 뜻은 결국 인구 상한인 31만 5000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올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委員長 李在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러면 내려서……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31만 5000에 못 미치는, 31만이 넘는 지역도 분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委員長 李在五** 아니, 분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확정위원회가 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31만 5000으로는 이게 작업이 안 되니까, 하다 보면 31만 3000도 될 수 있고, 31만 2000도 될 수 있다, 이 여유를 확정위원회에 넘겨 달라 이 말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런 뜻이라면 저희는 이해하겠는데요.

○**委員長 李在五** 그런 뜻입니다.

○**천정배 위원** 예컨대 현재 인구 상한이 31만 5000이라고 우리가 합의한 데에는, 현재 지역구 중에 31만 2000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는 분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게 하는 것이 상한의 의미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五**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4항이라는 것은 3항의 10만 5000명, 31만 5000명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결국 확정한다는 뜻입니까?

○**委員長 李在五** 글썄, 그런 것 아니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저는 4항은 3항에다 덧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李方鎬 委員**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넘어갑시다.

○**천정배 위원** 아니, 뜻을 우선 몰라요. 우리가 뭘 의결했는지도……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이 의견을 내면 31만 5000이 넘으면 분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31만 5000으로 하다 보니까 31만 3000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다, 몇천명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정개특위에서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저쪽의 주문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확정의 결과가 31만

5000이나 2000이 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정배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구 중에서, 예컨대 성동구라고 칩시다. 서울의 성동구 중에서…… 현재 서울 성동구의 인구는 31만 5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5000이 넘으면 인구 상한을 넘으니까 분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31만 5000이 안 되고, 31만 명밖에 안 되는, 5000여 명이 사실 부족한 구라 하더라도 분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터 주는 것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안 됩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분명한가요?

○**委員長 李在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현행 선거구 중에서 31만 5000을 넘지 않는 선거구의 분구는 불가능하군요. 그 점은 확실한 거지요?

○**委員長 李在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점을 이해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 4항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지역구 인구 하한은 불변이되, 인구 상한은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랬는데 하한을 불변으로 하고 상한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하한은 조정 가능하되, 상한은 불변이다’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5000이 넘는, 10만 6000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독립적인 선거구로 인정을 한다’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조정하다 보면 지역구가 10석이 넘어도, 12석, 16석이 되더라도 허용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 우리가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하한 10만 5000하고 인구 상한 31만 5000은, 상한은 31만 5000 범위 내에서 당연히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한도 10만 5000에서 11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하한선도 깨질 수 있는 것이고 상한선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애초 우리의 합의 정신의 기본 대원칙이었는데 이 4항이 들어감으로써 하한 자체는 깨지지 않는 것으로, 즉 10만 5000이 넘는 모든 선거구는 독립선거구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합의하고 의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4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이 여성전용선거구제 찬반토론하다가 이야기 하면 끝이 없으니깐 이것은 의사일정 뒤로 미루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은 현재 31만 5000명이 넘지 않는 지역구를 분구할 수는 없는 거지요.

○**委員長 李在五** 金學元 위원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金學元 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하한, 인구 상한이라는 취지는 인구 하한 미만이 되는 것은 통폐합하고 인구 상한이 넘는 것은 분구를 한다는 취지로 인구 하한·상한의 개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하한은 불변인데 인구 상한은 31만 5000명에서 합헌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합헌 가능한 범위는 10만 5000명을 불변으로 한다면 3 대 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깐 31만 5000명 안으로 줄이지 밖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31만 5000명 밑으로 내려가서 가령 31만으로 줄였다고 그러면 상한이 31만으로 조정되는 거니까 31만이 넘는 선거구는 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왜 분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한을 조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31만 5000명에서 31만 사이에 들어 있는 것을 분구를 안 한다고 하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고서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지금 초등학교 산수하는 겁니까?

○**천정배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31만 5000명이라는 상한선을 또 낮추어서 멸절된 선거

구까지 분구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이것은 그렇게 의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오늘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합헌 범위 내에서 상한을 조정하되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가장 적게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그 조항을 넣자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빠졌는데 이것을 만약에 천정배 위원의 얘기대로 31만 5000명을 쭉 내려 가지고 한 20만 쪼으로 내린다……

○**천정배 위원** 20만은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전부 분구되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줄이 되 합헌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 수가 제일 적게 늘어나는 방법을 택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냥 지나간 것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회고해 보면 우리 정개특위 말고 작년에 있었던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3당이 16석을 증가하자고 했던 것을 우리당이 반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2기 정개특위에 와서 아까 22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나눠 보고 상한선을 정하다가 그걸 조금 낮추고 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확정 과정에서 몇 석 늘면 그건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양해가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숫자라는 게 얼마인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8석이 늘어난다고 했다가 9석……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옛그제는 4석인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설왕설래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만약에 상한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된다면 9석도 아니고 14석, 15석, 16석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말에 한나라당이 16석 늘리자는 그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

지금 국민들이나 열린우리당이 거기에 합의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논의를 무로 돌리면서 작년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자꾸 자꾸 해석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논리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 볼 때,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요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인구 상한의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인구 상한의 수를 31만 5000명에서 1000~2000명 줄여들 수도 있고 이런 의미지 이것을 줄여서 선거구를 다시 늘려서 의원 정수를 계속 늘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金學元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라고까지 결과를 저희가 다 계산은 못 하겠습니까마는 10석을 훨씬 넘는 두 자리 수의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래서 金學元 위원 이야기도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합헌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227석에 가장 가까운 수로 하라는 이야기지 분구를 자꾸 해서 10석, 20석 늘려서 그렇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시민 위원** 이 사항은 무엇을 의결했는지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미뤄 두시고요.

○**委員長 李在五** 실컷 들어 놓고 다른 소리해요?

○**유시민 위원** 지금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좀 미뤄 두시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 놓고, 다음 이야기 하십시오.

○**정장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 논의될 사안이라면 간사님들끼리 나가서 좀더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동안 우리는 토론을 계속하시지요.

○**委員長 李在五** 그러십시오. 3당 간사 간에 같이 논의하십시오.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희정 위원** 지금 한국 여성의원 비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16대 의원 중에 여성이 5.9%이고

지역구는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정치개혁 논의과정에서도 ‘지역구는 30%의 활동도 어렵다’, ‘여성평등선거구제도 위헌이다’라고만 하는 상황이었고, 비례대표가 50%라고 해도 실제로 줄어서 5~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도 줄고 여성의 정치 진출이 16대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논의는 무성했지만 막상 최종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시점에서는 위헌임을 내세우기만 합니다.

지역구 30% 여성 할당 정신을 살려서 17대와 18대에 한시적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이 지역구에 도전하고 여성의 정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얼마 간의 시간을 주어서 지역대표성을 지니고 경쟁력 있는 여성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시민 위원 지금 반대론 펼친 두 분이 나가시고 안 계셔서 회의장이 갑자기 썰렁한데요. 그래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화 위원님도 반대하셨고 정장선 위원님도 반대하셨는데요. 지금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저는 냉엄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지역구 증원에 찬성하는 분일수록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거의 뚜렷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꼭 그런 건 아니고……

○유시민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나 하면, 지금 이 흐름대로 그냥 가게 되면 지역구가 최소한 10석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까 야당에서 하자고 주장했던 대로 가면 비례가 36석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자칫하면 30석 내외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절반을 할당해도 여성의원이 15명 또 지역구에서 약간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0석 내외의 여성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의원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5.9%에서 약 8.9% 정도로 3%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도대체 50% 여성할당을 비례대표에 적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으로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더 진출해야 되고 양성 평등을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동시에 지역구 증원에도 별로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찬성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7대 국회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극히 드문 여성의원들만이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을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흔쾌히 동의하시는 분으로서 이 광역선거구제가 위헌이니 뭐니 하는 여러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대하시려면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으셔야지요. 립서비스로 그냥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데 나도 찬성한다”, “나도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서는 다른 사람이 제안한 것은 반대하고 자기 자신은 그 어떤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해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당 안에서도 설왕설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하루아침에 꺼낸 얘기도 아니고 1~2년 전부터 벌써 논의되던 제도이고 그다지 복잡한 제도도 아니고 또 이것이 어느 정파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넓게 보셔서 대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2대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李方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李方鎬 委員 우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상당한 가능성과 가능성 제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성 문제 말이지요. 직접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3 대 1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전용선거구제 자체도 아무튼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하는데 이것이 3 대 1 증가성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많은 여성단체에서도 지역구 출마 여성의원들에 대한 불이익 문제 그리고 또 선거운동 방법 문제 등등 이것이 갑자기 들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여성의 정치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획기적인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국가대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여론에 떠밀려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꼭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26석의 증원이 국민적으로 양해가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려서 여성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오히려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광역선거구제인데요, 여성전용선거구제하고 약간 다르지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에 남자 국회의원 후보는 안 나오고 여성 국회의원 후보만 나오게 해 가지고 여성들만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냐’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약 여론조사에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아니라 여성광역선거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급히 당장에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사실 지역구 공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증원해서 비례대표에 여성 50%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60%까지 강제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 번째라고 봅니다.

사실은 하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지역구에 여성을 획기적으로 많이 공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를 늘려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은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서 그 부분에서 여성 할당을 50%나 60%…… 30% 정도 될 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른 정당들이, 또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이 방안이 여성광역선거구제보다 훨씬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안이 결국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7대, 18대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위험 소지가 굉장히 적고 또 위험 소지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 그런 부분도 다 좋지만 현실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가 그랬을 때 유일하게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외의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여성광역선거구제도를 특히 17대, 18대에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주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다, 또 이 방안 이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번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黃 위원이나 金聖順 위원님 의견 개진 안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유시민 위원 말씀하세요.

○**유시민 위원** 李方鎬 위원님께서 아까 85%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통계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

민여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저희도 재고해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기왕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여론조사, 국민의 의사는 존중하는 것이 좋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구 증원 문제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90% 이상 반대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선거구들을 지켜 주기 위해서 지역구를 10석 내외로 증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을 물어보면 제가 볼 때 거의 100%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하려면 일관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영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85%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여론조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믿을 만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를 여쭙어 보면 대체로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려서 그 비례대표 중에서 여성을 많이 할당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일반 여론이고, 여성광역구를 신설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마 두 번째 정도로 올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진취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말씀하세요.

○**손희정 위원** 김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광역선거구제를 여성전용구제로 생각해서 85%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를 50%로 한 것을 70~80%, 100%를 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 하고서는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黃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黃昌柱 委員** 여성의 정치 참여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위헌론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틀림없이 주장하시는 분들도 위헌이다, 국민정서에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7, 18대를 제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혹시 우리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을지, 만약에 법사위에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돌려보내지 않을지, 검토를 해 줄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시간 낭비를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헛되이 시간을 안 보내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용선거구제하고 광역선거구제하고 뭐가 다른니까? 말만 다르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시민 위원** 토론하는 것이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유시민 위원** 黃昌柱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또 전제로 붙이신 것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주십시오.

그전에 햇볕정책 말씀 많을 때 어느 분이 “햇볕정책이 싫으면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광역선거구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黃昌柱 委員** 이것이 꼭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당에서 현재 법 안에서, 예를 들면 많이 늘려서 반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당에서 100% 다 여성에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긴 하지만 꼭 헌법에 문제가 될 만한 법을 찾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법으로 만들지 말고 3당 또는 4당 간에 합의해서 ‘이번에 한해서 여성선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요.

○**委員長 李在五** 金聖順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金聖順 委員** 민주당 당론은 여성전용구제 찬

성인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여섯 위원님이 계시는데 의결을 못 하고, 선거법소위 위원 누구 계십니까?

○유시민 위원 제가 소위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국회법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하실 때 정부 측에서 참여했습니까?

여성광역선거구나 석패율제도는 의원 정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들었습니까?

○유시민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정부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 참석하긴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으니까 혹시……

○委員長 李在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17人)

| | | | |
|-------|-------|-------|-------|
| 金 聖 順 | 김 성 호 | 金 學 元 | 金 孝 錫 |
| 박 종 회 | 손 회 정 | 오 세 훈 | 원 희 룡 |
| 유 시 민 | 李 方 鎬 | 李 在 五 | 張 誠 源 |
| 全 甲 吉 | 정 의 화 | 정 장 선 | 천 정 배 |
| 黃 昌 柱 | | | |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李 昌 熙 |
| 전 문 위 원 | 安 秉 玉 |
| 입 법 심 의 관 | 李 秉 吉 |